

후원회 설립 가이드북

01. 후원회 설립 절차

- 1 업무 흐름도
- 2 후원회 정관 작성
- ③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및 대표자의 선임
- 4 후원회결성 회의록의 작성
- 5 후원회 지정신청 및 지정서의 교부
- 6 후원회 인영 조각 및 인영서의 작성
- 7 후원회 사무소 설치 및 소재지 약도의 작성
- 8 후원회 등록 신청
- 9 회계책임자 신고
- 10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



01 후원회 설립 절차

1. 업무 흐름도

정관 작성

 창립총회 개최

 및 대표자 선임

회의록 작성

□>

후원회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

⇨

⇨

후원회 인영조각 및인영서 작성

후원회 사무소 설치 및 소재지 약도의 작성

후원회 등록 신청 (회계책임자 신고 및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신청 포함)

관련 규정

- □ 후원회 정관 작성
- 규칙 제9조(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)
- □ 후원회 지정
- 법 제6조(후원회지정권자)

⇨

- 규칙 제5조(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)
- □ 후원회 명칭
- 규칙 제7조(후원회 등의 명칭)
- □ 후원회 사무소 설치
- 법 제9조(후원회의 사무소 등)
- □ 후원회 등록 신청
- 법 제7조(후원회의 등록신청 등)
- 규칙 제6조(후원회의 등록신청 등)
- □ 회계책임자 선임신고
- 법 제34조(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). 제35조(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)
- 규칙 제32조(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), 제33조(회계책임자의 겸임), 제34조 (예금계좌 등의 신고)

2. 후원회 정관 작성

- 가. 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을 위해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회 설립의 첫 단계로서 후원회의 정관을 작성합니다.
- 나. 정관이란 후원회의 조직형태,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원회의 내부 규칙을 말합니다.
- 다. 정관은 [작성예시]에 따른 표준정관을 참고하되 후원회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.
- 라. 후원회의 정관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구성합니다.

🏂 후원회 정관 필수 기재사항(규칙 제9조)

- □ 명칭·목적 및 소재지
- □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
- □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
- □ 대표자·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□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
- □ 해산에 관한 사항
- □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□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
- □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
- □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[작성예시]

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정관

20 년 월 일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

주 : 후원회의 명칭은 예시(p.22)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한다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'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 ○○○후원회'라 칭한다. (이하 "후원회"라 한다.)
- 제2조(목적) 본 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원회지정권자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 ○○○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 소재지) 본 후원회의 사무소는 ○○○구·시·군에 둔다.

제2장 회 원

- 제4조(회원) 정치자금 기부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 외한 모든 이는 자유의사에 의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- 제5조(가입과 탈퇴)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탈퇴는 탈퇴원서를 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제6조(회원의 제명) ①회원으로서 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.
 - ②회원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총 회

제7조(구성)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- 제8조(총회의 기능) ①총회는 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.
 - 1. 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, 의결
 - 2.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
 - 3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 - 4. 사업보고의 승인
 - 5.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
 - 6.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후원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, 의결
 - ②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 - ③총회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총회소집) 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.
- 제10조(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한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 -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자가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- 제11조(구성) ①총회의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총회에서 선출한다.
 - ③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, 위원장은 후원회의 대표자가 맡는다.

제12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- 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, 의결
- 2.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
-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4. 대표자 직무대리자의 선출 및 총무 선임
- 5. 업무보고의 승인
- 6. 회원의 제명 결의
- 7.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, 의결
- 제13조(회의소집)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②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의결정족수) ①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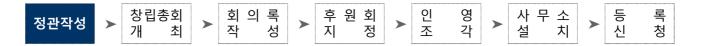
제5장 임 원

- 제15조(대표자) ①후원회에 대표자(회장) 1인을 둔다.
 - ②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- ③대표자는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 - ④대표자의 궐위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6조(총무) ①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둔다.
 - ②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고 대표자를 도와 후원회사무를 총괄하다.
- 제17조(회계책임자) 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·해임하며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.
 - ②회계책임자 사고 시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회계지출만을 하여야 하며, 대표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감사) ①후원회의 회계 및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.
 - ②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제 6 장 후원금 모금 및 기부

- 제19조(회비)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후원금 모금 등) 후원회는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.
- 제21조(모금의 제한) 본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「정치자금법」상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22조(기부) ①후원회는 지정권자에게 「정치자금법」의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까지 기부할 수 있다.



②본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. 이 경우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다.

제7장 해 산

제23조(해산) 후원회는 다음 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산된다.

- 1. 후원회지정권자가 지정을 철회한 경우
- 2.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3.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
- 4. 기타의 사유발생 시 후원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4조(잔여재산 처분)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「정치자금 법」제21조에 따라 처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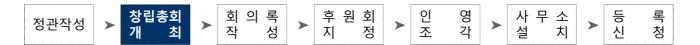
제 8 장 정관개정

제25조(개정)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임사항)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

3.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및 대표자의 선임

- 가. 후원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, 어느 정도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 들의 집단이 형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.
- 나. 창립총회는 개회 → 국민의례 → 경과보고 → 임시의장 선출 → 안건처리(정관 채택, 대표자 등 선출) → 폐회의 순서로 진행하되 후원회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임시의장의 역할

- □ 임시의장은 후원회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에 대표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으로서 후원회 창립총회 시 대표자를 대신하여 후원회 정관의 채택, 후원회 대표자 선출 등의 역할을 합니다.
- 다. 창립총회 개최 후 선임된 대표자에게 [작성예시]와 같은 취임 동의서를 제출 받습니다.
- 라. 후원회 대표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다만, 후원회 정관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공동 대표자 각각의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후원회 창립총회 관련 질의회답

- □ 후원회 창립총회 현장에서 후원금품 모집
-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한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부터 후원 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후원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(2004. 11. 8. 회답).

 정관작성
 →
 차립총회 개 최
 →
 회의록 작성
 →
 후원회 지정
 →
 인명 조각
 →
 사무소 설치
 →
 신원 청

[작성예시]

			취 임 동 의	서
성		명 ①	김중앙(한자 : 金中央)	
주		소②	서울특별시 관악구 백제	길 17
생 년	월	일 ③	1965년 1월 1일	
전 화	번	ই 4	(자택) 02-555-6543	(휴대폰) 010-1234-5678

본인은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의 대표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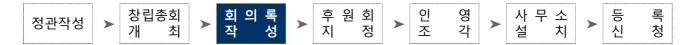
성 명 김 중 앙 (서명 또는 날인) ⑤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**귀중**

주.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당해 후원회에 제출함.

정관작성 ➤ 창립총호 개 초	회의록 → 작성	▶ 후 원 회 지 정	● 인 영 조 각	>	사 무 소 설 치	>	등 신	록 청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

	작 성 요 령
1)	후원회 대표자의 성명과 한자를 적습니다.
2	후원회 대표자가 거주하는 곳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
3	후원회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4	후원회 대표자의 자택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. ※ 자택 번호가 없을 시 기재 생략 가능
(5)	후원회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개인 인장(도장)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.



4. 후원회결성 회의록의 작성

- 가. 후원회 창립총회가 끝난 뒤 작성하는 결성회의록에는 창립총회 개최일시·장소, 안건처리 등 회의 진행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.
- 나. 회의록에는 회의 진행 상황을 기록한 기록자와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
- 다.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후원회 관계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회의록 각 페이지 원본대조필 날인란에 담당자의 인장(도장)을 날인 합니다.

업무TIP

□ 원본대조필 날인란에 후원회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하여도 됩니다.

체크 포인트

- □ 개최일시, 장소, 안건처리 등 진행 상황 기재 여부
- □ 후원회 등록신청사항(대표자 등)과 회의내용의 일치 여부
- □ 회의록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
- □ 각 안건이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

 정관작성
 →
 창립총회 개 최
 →
 회의록 작성
 →
 후원회 지정
 →
 인 영 조 각 →
 사무소설 치 →
 신 청

[작성예시]

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결성 회의록

일 시①: 2024년 7월 1일(월) 16:00~18:00

장 소②: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, 2층 201호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

기록자③ 홍길동 ①

확인자④ 나공명 ①

원본대조필 ① ⑤

식 순

- 개 회
 (성원현황 등 포함)
- 2. 국민의례
- 3. 경과보고
- 4. 임시의장 선출
- 5. 후원회 정관 채택
- 6. 대표자(회장) 등 임원 선출
- 7. 기 타
- 8. 폐 회

원본대조필 ①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결성 회의록

1. 개 회

사회자 :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결성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재적회원 총 ○○명중 ○○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. 그러면, 지금부터 ○○시·도의회의원 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의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.

2. 국민의례

사회자 :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국기에 대하여 경례! 바로!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경과보고

사회자 : 다음은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결성식을 개최하기 까지의 진행경과를 후원회 준비위원인 ○○○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.

○○○ :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
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○○시·도(○○구·시·군)의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하여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의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
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

○○○ : 지난 0월 0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, 뜻을 같이하는 ○○분이 참여하여 오늘 후원회 결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

4. 임시의장 선출

사회자 : 다음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임시의장 선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후원회 결성에 많은 노력을 하신 ○○○을 추천하겠습니다.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석자 : 전원 박수로 ○○○을 임시의장으로 선출

원본대조필 ①

 정관작성
 →
 차립총회 개 최
 →
 회의록 작성
 →
 후원회 지정
 →
 인명 조각
 →
 사무소 설치
 →
 전
 청

5. 후원회 정관 채택

임시의장 : 그러면 먼저 후원회 정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 배부해드린 정관을 검토하고 오셨으리라 보고 정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참 석 자 : (전원) 이의 없습니다.

임시의장 :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 후원회의 정관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6. 대표자(회장) 등 임원 선출

임시의장: 다음은 정관에 따라 본 후원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와 감사를 선출하고, 총회의 수임 기관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운영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○○ : 대표자에는 지금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원회설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○○○을 추천하고, 감사에는 ○○○님과 ○○○님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.

임시의장 : ○○○님으로부터 추천이 있었습니다.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 석 자 : (전원 손을 들면서) 동의합니다.

임시의장: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⑥ 후원회 대표자에는 ○○○을, 감사에는 ○○○, ○○○의, 운영위원에는 ○○○, ○○○의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임시의장 : 그러면, 후원회 대표자로 선출되신 ○○○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○○○ : 부족한 저를 대표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 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

7. 폐 회

사회자 : 이상으로 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결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원본대조필 ①

정관작성	➤ 창립· 가	총회 최	회 의 <u>자</u>	록 성	후 원 ➤ 지	<u>회</u> 정	▶ 인 조	영 각	>	사 무 섴	소 치	>	등 시	록 청
	711	소	씍	8		8	소	4		2	시		신	8

	작 성 요 령
1)	후원회 창립총회를 한 일시를 적습니다. 예) 2024년 7월 1일(월) 16:00 ~ 18:00
2	후원회 창립총회를 한 장소를 적습니다. 예)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, 2층 201호
3	후원회결성 회의록을 기록한 사람을 적고 그 인장(도장)을 날인합니다.
4	후원회결성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자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인장(도장)을 날인합니다.
(5)	회의록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담당자가 확인하여 날인합니다. ※ 후원회 대표자 직인 날인 가능
6	후원회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(예 :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)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.



5. 후원회 지정신청 및 지정서의 교부

- 가. 후원회로서 외형과 실질을 갖춘 단체는 지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나. 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을 후원하려는 1개의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한 후원회에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합니다.
- 다. 후원회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후원회지정권자(법 제6조)

- □ 지방의회의원(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)
 - 시·도의회의원(지역구, 비례)
 - 예) 서울특별시의회의원○○○. 경기도의회의원○○○
 -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지역구, 비례)
 - 예) 강동구의회의원()(), 안산시의회의원()(), 부여군의회의원()()

후원회 지정 관련 과태료(법 제51조)

- □ 후원회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등 후원회 등록신청을 해태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정관작성
 ▶
 창립총회 개 최
 ▶
 회의록 작성
 ▶
 후원회 지 정
 ▶
 인 영 조 각
 ▶
 사무소설 치
 ▶
 전 청

[작성예시]

[규칙 별지 제3호 서식]

후원회 (지정) · (지정철회)서①

문서번호

명	칭②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							
사무소의	소 재 지 ③	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, 2층 201호	전 화 번 호	02-000-0000							
	성 명	김중앙(한자 : 金中央)	주민등록번호	710101-1234567							
대표자④	주 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○○ (○○동, ○○아파트)	전 화 번 호	010-1234-5678							
(지정)·(지 연 월	정철회) 일⑤	20 년	월 일					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6조·제7조제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(지정)·(지정철회)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 ⑩ ⑥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귀중

주: "명칭"칸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정관작성	➤ 창립 개	총회 최	➤ 회 ^으 작	의 록 성	▶ 후 기	원 회 정	>	인 조	영 각	>	사 무 설	- 소 치	>	등 신	록 청	
L	L				1											

	작 성 요 령
1)	후원회 지정 혹은 지정철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"○" 표시를 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
2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
3	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
4	후원회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후원회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※ 전화번호는 대표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가능
(5)	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에 지정서를 교부한 연월일 또는 지정철회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(6)	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인장(도장)을 날인합니다.

6. 후원회 인영 조각 및 인영서의 작성

① 후원회의 명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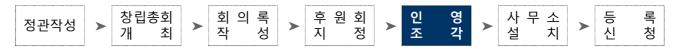
- 가. 시·도의회의원 : ()()시·도의회의원()()()후원회
- 나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: 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○○○후원회
- ☞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음.

후원회의 명칭 예시

- □ 시·도의회의원후원회
 - 예) 서울특별시의회의원〇〇○후원회, 경기도의회의원〇〇○후원회
- □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
 - 예) 강동구의회의원〇〇○후원회, 안산시의회의원〇〇○후원회, 부여군의회 의원〇〇○후원회

② 후원회 인영(도장)

- 가. 후원회의 인영(도장)인 회인과 대표자 직인은 [작성예시]를 참고하여 제작하며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, 뚜렷하게 붉은 색 으로 날인합니다.
 - ※ 인영을 제작하기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명칭을 확인함.
- 나. 인영은 위조될 수 없도록 조각하며 인영의 규격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.



[작성예시]

[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지]

	인 영 서
명 칭①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
회 인②	 ○ ○ 의 회의원 ○ ○ ○ 후 원 회 인 ※ 인영에 표시된 문자: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인
대표자 직인③	 ○ 의회의원 ○ ○ ○ 후원회대표자인 ※ 인영에 표시된 문자: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대표자인
비 고	

- 주 1. 후원회의 등록(신고)시 또는 이미 등록(신고)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(신고)시 사용합니다.
 - 2. "명칭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.
 - 3.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, 뚜렷하게 붉은 색으로 날인합니다.
 - 4. "비고"란에는 등록(신고) 또는 변경등록(신고)의 사유와 일자 등을 담당공무원이 기재합니다.

정관작성	➤ 창립· 개	총회 치	회 으 자	록 성	> 후 원 > 지	원 회 정	인 조	영 간	➤ 사 ⁻ 서	구 소	>	등 시	록 청
	/H	외	식	싱	시	싱	소	4	길	시		신	⊘

	작 성 요 령
1)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
2	후원회 명의의 인영은 위조될 수 없도록 조각한 후 찍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인
3	후원회 대표자 명의의 인영은 위조될 수 없도록 조각한 후 찍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대표자인

7. 후원회 사무소 설치 및 소재지 약도의 작성

- 가. 후원회는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나. 후원회의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업무TIP

- □ 후원회 대표자와 회계책임자에게 급여 지급 시 유급사무직원에 포함됩니다.
- 다.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 「정치자금법」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
- 라. 후원회 소재지의 약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등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붙여넣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.

후원회 사무소 관련 과태료(법 제51조)

- □ 후원회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한 경우(2인 초과)
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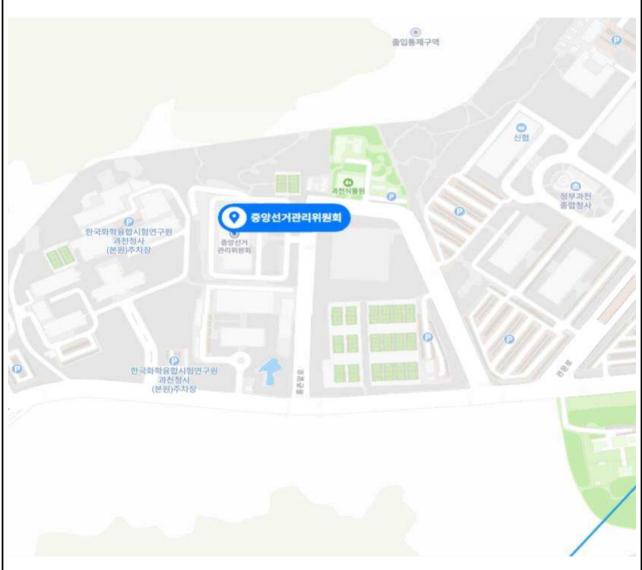
후원회 사무소 관련 질의회답

- □ 후원회사무소 간판의 규격 등
- 「공직선거법」상 후원회사무소 간판의 규격 및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 게 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(2023. 12. 11. 회답).

 정관작성
 →
 창립총회 개 최
 →
 회의록 작성
 →
 후원회 지 정
 →
 인 영 조 각 →
 사무소설 치 →
 신 청

[작성예시]

	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
명 칭①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
사무소주소(2)	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, 2층 201호
전 화 번 호③	02-000-0000
[약도]④	•



정관작성	▶ 창립총회 개 최	▶ 회의록 작성	▶ 후 원 회 지 정	인 영 조 각	사 무 소 설 치	► 등 록 신 청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	작 성 요 령							
1)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							
2	후원회 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							
3	후원회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가능							
4	후원회 사무소의 약도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등을 그림 파일로 저장하여 붙여넣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.							

8. 후원회 등록 신청

가. 후원회 대표자는 지방의회의원인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🎾 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

- □ 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시·도위원회
- □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
- □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
- □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

체크 포인트

- □ 후원회 정관 내용이 법과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
- □ 후원회 등록신청 내용과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
- □ 후원회 명칭과 인영내용의 일치 여부
- 나. 다음의 경우에는 후원회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.
 - 후원회 등록신청에 있어서 후원회 성립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어 처음부터 보정·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
 -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보정·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보정·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

<u>후원회 등록 관련 과태료(법 제51조)</u>

- □ 후원회 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정관작성 ➤ 창립총회 개 최 ➤	회 의 록 작 성 ➤	후 원 회 지 정 >	인 영 조 각 > 사무소 설 치	등 록 신 청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[작성예시]

[규칙 별지 제4호 서식]

		후원회 등록신청/	서			
문서번호						
명	칭①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		
사무소의	소재지②	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, 2층 201호	전 화 번 호③	02-000-0000		
대표자④	성 명	김중앙(한자 : 金中央)	주민등록번호	710101-1234567		
네 표 자 ④ 	주 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○○ (○○동, ○○아파트)	전 화 번 호	010-1234-5678		
정관 또	는 규약	붙임 1				
회인 및 대표/	사 직인의 인영	붙임 3				

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1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월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직인 ⑤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- 1. 정관 또는 규약 1부.
- 2.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.
- 3. 인영서〈별지〉 1부.
- 4. 후원회지정서 1부.
- 5.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.
- 6.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.
- 주 1. "명칭"칸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 - 2. 회의록은 기록자·확인자의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"원본대조필"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

정관작성 ▶	창립총회	회의록	후 원 회	인 영	사무소	등 록
0070	개 최	작 성	지 정	조 각	설 치 1	신 청

작 성 요 령						
1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					
2	후원회 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					
3	후원회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가능					
4	대표자의 성명(한자 포함)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가능					
(5)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					

9. 회계책임자 신고

가. **후원회 대표자는** 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 시 **후원회 회계책임자**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업무TIP

- □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두는 경우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별개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반드시 선임·신고하여야 함.
 - 지방의회의원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(법 M34조M3항).
- 나. '회계책임자'란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후원회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다. 회계책임자 신고 시에는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정치자금 수입·지출용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.

업무TIP

- □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예금계좌 개설 신고는 생략합니다.
- 라. 회계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둘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.

회계책임자 겸임 불가(법 제34조, 규칙 제33조)

- □ 지방의회의원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
- □ 후원회 대표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

마. 최초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시 예금계좌는 **회계책임자의** 명의로 신고하되 수입용 계좌의 경우 1개 이상,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합니다.

예금계좌 개설요령

□ 1개의 통장을 수입·지출 겸용으로 사용 가능

회계책임자 관련 벌칙 및 과태료(법 제47조. 제51조)

- □ 회계책임자 신고 시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자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회계책임자 변경 시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·인수하지 않은 자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회계책임자 변경 시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·인수를 지체한 자
-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□ 회계책임자 선임·겸임·변경신고를 해태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회계책임자 관련 사항

- □ 선임권자의 회계책임자 겸임
- 「정치자금법」제34조제3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·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(2010. 4. 8. 회답).
- 지방의회의원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(tl 제34조제3항).
 - ※ 다만,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이 후원회지정권자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는 없음

[작성예시 1]

[규칙 별지 제27호 서식]

회계책임자 (선임)·(겸임)·(변경)신고서①

문서번호

군기년	건모							
취 게 케 이 기 🌣		성 명	김 공 명(한자 : 金 公 明)]등록번호	900101-12345	
회계책임자②	색 임 사 ②	주 소	경기도 여주시 ○○로 ○○ 전 화 번 호 010-1234		1234-5678			
(선임)·(겸임)·(변경	형)연월일③		20 년		월 일		
겸임	하는 회계책임	자의 신분						
정치	지 자 금 예	금 계 좌	예금주	금융기관명	3	계좌번	호	비고
	ol	Ω	000	OO은행		000-	00	
수	입	<u> </u>						
지	출	9(4)	000	OO은행		000-	00	

「정치자금법」 ⑤(제34조제1항)·(제34조제3항)·(제35조제1항)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(선임)·(겸임)·(변경)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<u>직인</u> ⑥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- 1.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.
- 2. 정치자금 수입·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(예금계좌 개설 신고시).
- 3.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·인수서 1부(변경신고시).
- 주 1.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,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대표자, 지방의회의원이 됩니다.

-			+1 =1	* 41			~I =	1		이 심	1	ΟI	~.	11			=	_
	정관작성	>	상딥	송외 치	>	회 자	의 녹	>	무디	원 외 저	>	인	영	➤ 사	무 소	>	짇	녹 쳐
			7П	꾀		끡	Ö		\ \1	Ö		エ	7	12	시		신	Ö

	작 성 요 령						
1	회계책임자 선임 방식에 따라 선임, 겸임,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하여 "○" 표시를 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						
2	회계책임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						
3	회계책임자를 실제로 선임·겸임·변경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						
4	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합니다. ※ 1개의 계좌로 수입 및 지출 겸용 가능						
(5)	· 선임 - 제34조 제1항 선택 · 겸임 - 제34조 제3항 선택 · 변경 - 제35조 제1항 선택						
(6)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						

정관작성 ➤ <mark>창립총회</mark> → 회의록 → 후원회 → 인 영 사무소 설 치 **> 등 록** 신 청

[작성예시 2]

		취 임 동 의	서
성	명 ①	김공명(한자 : 金公明)	
주	소②	경기도 여주시 ○○로 ○○	
생 년 월	일 ③	1990년 1월 1일	
전 화 번	<u>ই</u> (4)	(자택) 02-123-4567	(휴대폰) 010-1234-5678

본인은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김 공 명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귀 하

주.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당해 후원회 대표자에게 제출함.

정관작성 ➤ 창립총회 개 최 ➤	회 의 록 작 성 ➤	후 원 회 지 정 >	인 영 조 각 > 사무소 설 치	등 록 신 청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작 성 요 령						
1)	회계책임자의 성명과 한자를 적습니다.					
2	회계책임자가 거주하는 곳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					
3	회계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					
4	회계책임자의 자택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. ※ 자택 번호가 없을 시 기재 생략 가능					

정관작성 ➤ <mark>창립총회</mark> → 회의록 → 후원회 → 인 영 사무소 설 치 **> 등 록** 신 청

[작성예시 3] - 회계책임자 변경 시 작성

[규칙 별지 제28호 서식]

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 · 인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공명 900101-1234567 자 계 이 (전 회계책임자) 주소 경기도 여주시 ○○로 ○○ 전화번호 02-000-000 성명 한라산 주민등록번호 710101-1234567 자 ٥J 수 (현 회계책임자) 충청북도 단양군 〇〇로 〇〇 주소 전 화 번 호 02-000-0000 인계 · 인수내역 별지 참조 인계 · 인수연월일 월 20 녉 일

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·인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인계자 전 회계책임자 김 공 명 (인) 인수자 현 회계책임자 한 라 산 (인)

입회자 ○○시도의회의원(○○구시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○○○ 직인

- 주 1. 인계·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·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2. "인계·인수내역"란에는 재산, 정치자금의 사용잔액, 회계장부, 예금통장·신용카드, 후원회인·그 대표자 직인, 구입·지급품의서, 지출결의서,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(원부포함)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,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- 3. "입회자"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·날인합니다.

인계 · 인수 내역

	구	- 분	수량	금 액(원)	비 고
정치	자금 수입·	지출보고서 출력물	1		
정	정치자금 수입·지출부 출력물				
정치자	금 회계관리	믜 프로그램 백업파일	1		
	영수증 등	지출증빙서류	50		증빙서류 총매수기재
	수입용	00은행, (123-45-678901)	1	5,000,000	통장잔액 기재
신 고 된 예금계좌					
	지출용	00은행, (123-45-678901)			
체크카드	트(00은행,	9410-3210-0000-0000)	1		
		책상	4	50,000	
	의자		2	20,000	
	컴퓨터			500,000	
	:			÷	

[※] 인계·인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.

10.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

가. 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 시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.

Ø.

정치후원금센터란?

- □ 정치후원금센터 개요
 - 정치후원금센터는 후원금의 모금 및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중앙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
- □ 특징 및 장점
 -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가능
 -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분실 시 재발급 용이
 - ※ 지방의원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부(전자결제)는 할 수 없으며,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업무만 가능
- □ 접속주소
 - **후원회** : 후원회관리자사이트(https://support.give.go.kr:442)
 - ▶ 후원금 모금내역 입력·수정, 영수증 출력, 회계보고용 파일 추출 가능
 - **후원인** :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give.go.kr)
 - ▶ 후원회 연락처·주소 등 검색,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직접 출력 가능
- 나.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서는 [작성예시]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후원회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.
- 다. 신청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 정당과에 제출합니다.
- 라. 후원회 관리자사이트(http://support.give.go.kr:442)의 계정 정보(아이디, 비밀번호)는 중앙위원회에서 메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합니다.

정관작성 ➤ ^{창립총} 개	<u> </u>	회 의 록 작 성	>	후 원 지	회 정	인 조	영 각	➤ 사 설	무 소 치	>	등 신	록 청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

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방법

- □ 1단계 :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관리자사이트(http://support.give.go.kr:442)에 접속합니다.
- □ 2단계 : 후원금 모금내역을 등록합니다.
 - ▶ 메 뉴 : [후원금관리] [후원금등록] [일괄등록/수기등록]
 - ▶ 방 법 : 수기등록(1건) 또는 일괄등록(100건)
- □ 3단계 : 전자 정치자금영수증을 출력합니다.
 - ▶ 메 뉴 : [후원금관리] [후원금/영수증관리] [출력하기] 버튼
- 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'[부록3] 정치자금영수증 전자발급 안내매뉴얼'참조

 정관작성
 →
 창립총회 개 최
 →
 회의록 작성
 →
 후원회 지정
 →
 인명 조각
 →
 사무소설 치
 →
 첫

[작성예시]

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이용신청서

	구 분			<u> </u>	내 용	비	고
후원회명			후원회명	3	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
	정 당 명				소속 정당명 또는 무소속		
선거구명					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 : ○○시·도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: ○○구·시·군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 : ○○시·도의회의원○○구·시·군제1선거구 지역구구·시·군의회의원 : 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○○구·시·군가선거구		
				성 명	홍길동		
			대표자	생년월일	1950. 3. 1.		
호				휴대폰번호			
			-1 11	성 명			
	원	회	회 계 책임자	생년월일	1970. 5. 1.		
			省日へ	이 메 일			
				휴대폰번호			
			기 및 지	주 소			
			사무실	전화번호		공7	H용
기 ¹ 수령			은	행 명	은행명		
			예-	금주명	예금주명		
	덩 <i>계</i> 	경계와	계절	와번호	선관위에 신고된 후원회 수입용 예금계좌 중 1개 선택		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**직인**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후원인 개인정보의 수집·보유 및 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,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 개인정보처리 방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